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21

2023. 11. 30.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1. 30.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11.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3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 슈퍼성장시대, 시민시장시대, 실용·통합시대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4급 기구 및 소관사무 조정

(안 제4조, 제6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9조)

- 신설 : 미래도시추진단, 공원녹지관리사업소
- 명칭변경 : 산업경제국(→재정경제국), 교통국(→교통안전국)
  도시관리사업소(→도로관리사업소)
- 폐지 및 기능이관 : 평생학습원(→문화교육국)

○ 5급 기구 및 소관사무 조정

(안 제5조 ~ 제6조의2, 제7조의2, 제9조 ~ 제10조의2, 제25조의2)

- 신설 : 시민시장담당관, 인사과, 예산과, 건축관리과, 전략산업과, 기반조성과, 하천공원관리과, 휴양시설관리과
- 소속이관

· 법무담당관(보좌기관 → 기획조정실)

· 시민안전관(보좌기관 → 교통안전국)

· 회계과, 재산관리과(기획조정실 → 재정경제국)

·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평생학습원 → 문화교육국)

· 신도시과, 도시재생과(도시국 → 미래도시추진단)

· 공원관리과(도시관리사업소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 명칭 변경 · 기능 조정

· 종합민원담당관(→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홍보담당관)

· 법무담당관(→의회법무과), 시민안전관(→시민안전과)

· 기획예산과(→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행정지원과)

·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 신도시과(→미래도시과)

· 철도교통과(→교통정책과),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보건행정과)

- 폐지 및 기능이관

· 미래전략관(→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전략산업과)

· 총무과(→행정지원과, 인사과), 소상공인과(→지역경제과)

· 평생학습과(→미래교육과), 진접읍·화도읍 산업환경과(→도시건축과)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신설, 평생학습원 폐지, 금곡동주민센터 이전 등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1)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조례안으로 왕숙신도시 조성과 시정 목표에 따라 1추진단 2개 과를 증설하여 1실 6국 1추진단 3직속 3사업소 등으로 변경하고 시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표 1)

< 본청 조직 개편안 >

구분	개편 전 1실 6국	개편 후 1실 6국 1추진단	증감
실	기획조정실(6과)	기획조정실(6과)	-
국	**(6국 37과)** 복지국(6과), 문화교육국(5과), 산업경제국(7과), 환경국(6과), 도시국(8과), 교통국(5과)	**(6국 1추진단 44과)** 재정경제국(8과), 복지국(6과), 문화교육국(7과), 환경국(6과), 도시국(7과), 교통안전국(6과), 미래도시추진단(4과)	단증 : 1 과증 : 7
직속 기관	- (시장 직속 : 2)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 (부시장 직속 : 4)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시민안전관	- (시장 직속 : 1) 시민시장담당관 - (부시장 직속 : 3)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관감 : 1 관감 : 1

○ 본청의 보좌기관과 보조기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 제5조의 보좌기관은 미래전략관을 폐지하며 전략수립 기능을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로 미래산업 유치 기능을 미래도시추진단의 전략산업과로 이관하였고, 법무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로, 종합민원담당관을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명칭 변경하며 이관하였으며, 시민안전관을 교통안전국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6관의 시장, 부시장 보좌 직속기관을 4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본청의 기획조정실의 총무과를 폐지하고 사무의 일부를 행정지원과 인사과로 기능 이관하고, 기획예산과의 각각의 사무를 정책기획과와 의회법무과, 예산과 사무로 조정하였으며 회계과, 재산관리과를 재정경제

국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6과를 유지하여 기구 명칭에 맞게 소관 사무의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판단되며,

- 현행 산업경제국은 회계과와 재산관리과의 배치에 따라 재정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상공인과를 폐지하여 경제 사무를 추가해 지역경제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문화교육국은 평생학습원 폐지에 따라 평생학습 기능을 미래교육과로 이관하였고,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운영과을 이관받는 등 2과가 증설되었습니다.

- 도시국은 도시재생과, 신도시과 사무가 신설되는 미래도시추진단으로 이관되고, 행정복지센터 건축인허가 사무가 본청으로 환원됨에 따른 건축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 교통국은 부시장 직속에 있던 시민안전관이 시민안전과로 변경 배치됨에 따라 교통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철도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미래도시추진단은 도시국의 신도시과와 도시재생과를 이관받았으며 신도시과를 미래도시과로 명칭 변경하고, 미래전략관의 미래산업 기업유치 기능과 기업지원과의 산업정책 기능을 담은 전략산업과를 신설하였으며, 신도시과의 신도시 조성과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 기능을 담은 기반조성과를 신설하는 등 총 4과로 구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읍면동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 직속 기관인 남양주, 풍양보건소(과 명칭 변경은 규칙사항)와 농업기술센터의 변경사항은 없으며,

- 사업소는 현행 평생학습원을 폐지하고, 공원 및 도로관리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관리사업소를 도로관리사업소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기능을 나누어 별도의 2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읍면동 행정기구는 산지전용 및 형질변경허가 권한을 본청으로 환원시킴에 따라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진접읍, 화도읍의 산업환경과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왕숙신도시 조성 및 민선 8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대응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시의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력 확보 측면에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기구 설치시 고려사항을 명시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대규모 조직 개편은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주　　문

○ 이와 같은 대규모 조직 개편 시에는 부서의 업무량은 물론, 사무의 환원이나 조직의 통폐합에 따른 각종 변수를 사전에 예측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원과 인허가 업무 등과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부서 간 업무 편차가 심한 경우 시행 규칙 상 이동할 수 있는 직원 인사 운용의 묘를 살려 불필요한 내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21

2023. 11. 30.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가.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져 가고 각종 인명사고나 중대 재해로 인해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시점에서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시민안전관의 역할은 더욱 절실해지는 바 부시장 직속의 독립적인 보좌기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여 안전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실·국·소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조정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골자

가. 개정안 중 교통안전국의 “시민안전과”를 부시장 밑에 “시민안전관”으로 하고 “교통안전국”을 “교통국”으로 한다.

나.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중 “교통안전국”을 “교통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민안전관: 안전정책 총괄·기획·조정, 재난지휘·관리, 중대재해예방, 배수펌프장운영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교통안전국)”을 “(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정책과, 시민안전과”를 “교통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8항) 중 “교통안전

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7항) 중 ““교통국장, 도시관리사업소장”을 “교통안전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를 ““도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0항을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0항) 중 “중 “교통국장”을 “교통안전국장”으로, “도시관리사업소장”을” 을 “중 “도시관리사업소장”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23항) 중 “재정경제국장·도시국장·교통안전국장”을 “재정경제국장·도시국장·교통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본문)

현 행	원 안(개정안)	수 정 안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복지국, 문화교육국, 산업경제국, 환경국, 도시국 및 교통국을 둔다.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경제국, 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국, 도시국, 교통안전국 및 미래도시추진단을 둔다.	제4조(실·국의 설치) ---------- ---------- ---------- ---------- ---------- 교통국 ----------.
제5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미래전략관 및 종합민원담당관을 둔다.	제5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시민시장담당관을 둔다----------.	제5조(보좌기관) ① (**원안**과 같음)
② 부시장 밑에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및 시민안전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관 및 민원담당관을 둔다.	② --------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전략관: 시정전략 수립, 미래산업유치 및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1.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소통 시책 및 시민참여 소통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1. (**원안**과 같음)

<신 설>	<신 설>	2. 시민안전관: 안전정책 총괄·기획·조정, 재난지휘·관리, 중대재해예방, 배수펌프장운영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종합민원담당관: 민원행정의 총괄 및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홍보기획관: 시정홍보기획, 홍보·지원 및 공보에 관한 사항 4. 법무담당관: 법무행정 및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5. 감사관: 공직 윤리, 감사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6. 시민안전관: 안전정책 총괄·기획·조정, 재난지휘·관리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홍보담당관: 시정홍보기획, 홍보·지원 및 공보에 관한 사항 3. 감사관: 공직 윤리, 감사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4. 민원담당관: 민원행정의 총괄 및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 5. (**원안**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10조(교통국) ① 교통국에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 도로건설과를 둔다.	제10조(교통안전국)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시민안전과, 대중교통과,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 도로건설과를 둔다.	제10조(교통국) ① ---------- 교통정책과 ----------.
②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교통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교통국장----------.
1. (생 략) <신 설>	1. (생 략) 2. 안전정책 총괄·기획·조정, 재난지휘·관리, 중대재해예방, 배수펌프장운영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 5. (생 략)	3. ~ 6. (생 략)	2. ~ 5.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신·구조문대비표(부칙)

원 안(개정안)	수 정 안
제1조. ~ 제4조. (생 략)	제1조. ~ 제4조. (**원안**과 같음)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민안전관”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 9. 교통안전국장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원안**과 같음) <삭 제>
⑤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민안전관”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	<삭 제>
⑥·⑦ (생 략)	④·⑤ (**원안**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⑧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교육국장, 산업경제국장, 도	⑥ ---------- ----------. ---------- ----------

시국장, 교통국장”을 “재정경제국장, 문화교육국장, 도시국장, 교통안전국장”으로, “도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교통국장”----------.
⑨ ~ ⑫ (생 략)	⑦ ~ ⑩ (**원안**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⑬ 남양주시 광릉숲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국장”을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	<삭 제>
⑭ ~ ⑯ (생 략)	⑪ ~ ⑬ (**원안**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국장, 도시관리사업소장”을 “교통안전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⑭ ----------. ---------- “도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
⑱ (생 략)	⑮ (**원안** 제18항과 같음)
⑲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	<삭 제>

통안전국장”으로 한다. ⑳ 남양주시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국장”을 “교통안전국장”으로, “도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⑯ ---------- ---------- ----------. ---------- ------중 “도시관리사업소장”을 ----------.
㉑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	<삭 제>
㉒ (생 략)	⑰ (**원안** 제22항과 같음)
㉓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산업경제국장·도시국장·교통국장”을 “재정경제국장·도시국장·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	⑱ ---------- ---------- ----------. ---------- ---------- “재정경제국장·도시국장·교통국장”--- ----- -----.
㉔ ~ ㉘ (생 략)	⑲ ~ ㉓ (**원안**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와 같음)

참고 : 수정 조례안(그 외 생략)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생략>

제2장 시본청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경제국, 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국, 도시국, 교통국 및 미래도시추진단을 둔다.

제5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시민시장담당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및 민원담당관을 둔다.

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소통 시책 및 시민참여 소통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안전관: 안전정책 총괄·기획·조정, 재난지휘·관리, 중대재해예방, 배수펌프장운영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3. 홍보담당관: 시정홍보기획, 홍보·지원 및 공보에 관한 사항
4. 감사관: 공직 윤리, 감사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5. 민원담당관: 민원행정의 총괄 및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생략>

제10조(교통국)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 도로건설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 철도, 교통체계개선, 교통정보 및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2. 버스, 택시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설치·운영 및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4. 차량관리, 차량사법경찰, 화물 및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5. 건설행정 및 도로건설에 관한 사항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0조의2에 따른 미래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7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조정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본청 등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 또는 수임 받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법무담당관”을 “의회법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종합민원담당관으로”를 “민원담당관으로”로, “종합민원담당관이”를 “민원담당관이”로 한다.

②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종합민원담당관”을 “민원담당관”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경제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철도교통과장”을 “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교육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국장, 교통국장”을 “재정경제국장, 문화교육국장, 도시국장, 교통국장”으로, “도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남양주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을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남양주보건소장”으로 한다.

⑧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산업경제국장, 환경국장, 평생학습원장”을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⑨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⑩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경제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⑫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경제”를 “재정경제”로,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을 “행정지원과장, 예산과장”으로 한다.

⑬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⑮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주택과장”을 “건축관리과장”으로 한다.

⑯ 남양주시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⑰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평생학습원장”을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

⑱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산업경제국장·도시국장·교통국장”을 “재정경제국장·도시국장·교통국장”으로 한다.

⑲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7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⑳ 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㉑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법무담당관”을 “의회법무과장”으로 한다.

㉒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㉓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도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 중 “교통계획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